

- 수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-

주민설명회 안내자료



수영구
(토지정보과)

**코로나19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에
따른 확산 방지를 위하여
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
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**

주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

I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

1 지적재조사사업 개요

정 의

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·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적 사업

근 거

-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(2012. 3. 17. 시행)
- 지적재조사사업무규정(2015. 1. 6. 시행)

사업기간 : 2012년 ~ 2030년

2 추진 배경 및 목적

- 현재의 종이지적도는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사용 중이며, 오래되어 도면이 신축, 마모, 훼손 되어 있으며,
- 또한 옛날과는 비교도 안 될 측량장비와 기술의 발달로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, 면적 등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치할 경우 이웃 간의 경계 다툼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음
- 따라서 최신의 기술력으로 전 국토를 새로이 조사·측량하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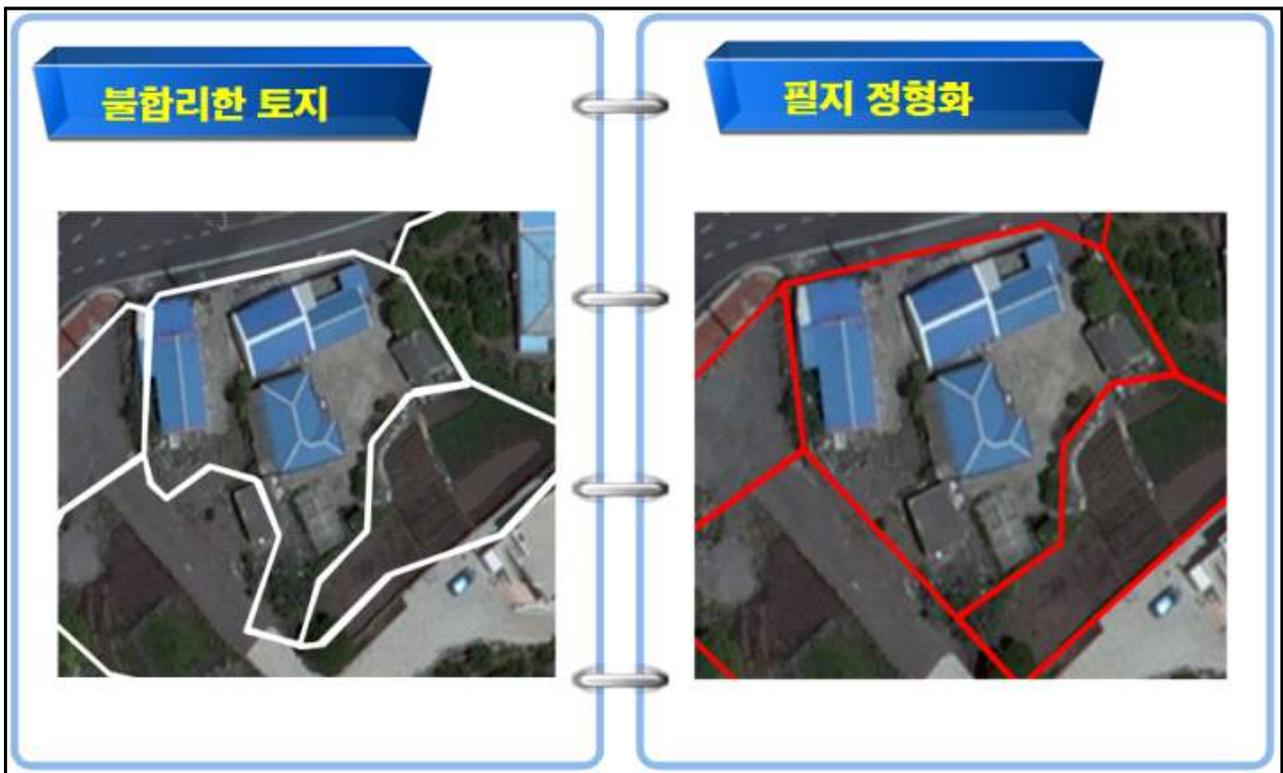
종이지적을 디지털(좌표)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하고,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도록 바로 잡음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음

3 사업추진 절차



4 경계 조정사례(기대효과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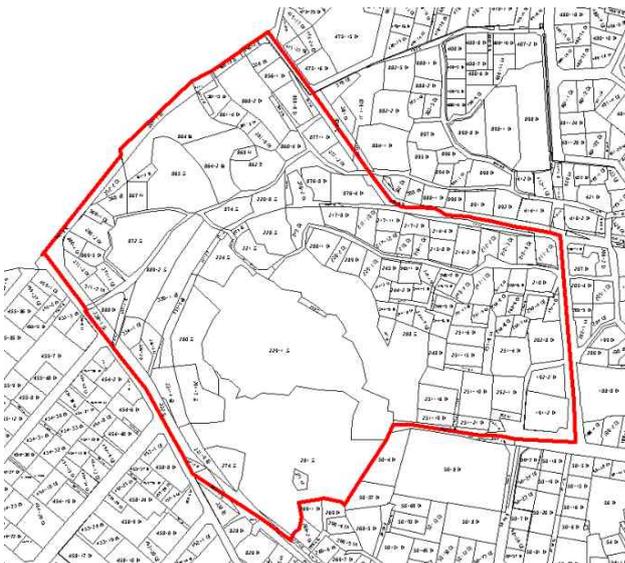


Ⅱ 수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

1 수영3지구 사업개요

- 사업시행자 :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
- 사업지구명 : 수영3지구
- 위치 및 면적 : 수영동 229-1번지 일원 (175필지, 47,238㎡)
- 사업기간 : 2020. 12월 ~ 2022.12월
- 사업예산 : 42,969천원(측량비, 전액 국비)
- 사업지구 위치현황

사업지구 지적도



사업지구 항공사진



2 사업지구 선정배경

- 해당지구는 2007년 지적경계정비 사업대상지로 조사 된 지역이며,

지적경계 정비사업은 지적경계와 현지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여 국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 토지를 정리하는 사업임.
-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·의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, 수영사적공원 및 주거 밀집지역 다수의 필지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불일치하고 지적측량 성과의 제시가 용이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
- 금번 지적재조사사업 실시로 점유경계와 공부상 경계를 일치 시킴으로써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

3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 제출

-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(區→市)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면적 2/3 이상 동의 필요
-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
 - 1필지 공유인의 경우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
 - ☞ 대표자 지정 동의서 첨부
 - 1인 다수필지 소유의 경우 필지 수 관계없이 1인으로 산정
 - 미성년자이거나 심신미약 및 사망 등으로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친권자, 후견인 또는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 - ☞ 친권자, 후견인,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첨부

- 종종, 마을회 등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1인으로 산정
 ☞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첨부
- 토지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수 제외

●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 제출

-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
- 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, 전산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가능
- 토지소유자의 사정상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음
 ☞ 위임장과 신분증사본 제출

4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

●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(토지소유자협의회)

- 토지소유자 권리보호 및 참여와 지지를 얻어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함

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

- 토지소유자 1/2 이상 및 토지면적 1/2 이상 동의 필요
-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~ 20명으로 구성
- 위원은 수영3지구 토지 소유자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

● 토지소유자협의회 역할

- 지적소관청에 대한 우선사업지구의 신청
-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입회
-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입회
-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
-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

● 토지소유자협의회 운영

-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함
-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(開議)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
-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

5 조정금의 산정

●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 상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조정금 산정

- 면적이 **줄어든 경우 지급**하고 **늘어난 경우 징수함**

※ 토지소유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갖추기 위함

● 조정금의 산정기준 :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의 감정평가액

- 토지소유자협의회 요청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할 수 있음

6 주민 협조사항

●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 제출

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·운영

● 자료조사 및 측량수행에 따른 토지출입 협조(신분증 패용)

● 토지현황조사에 따른 주민 입회

- 토지이용현황과 건물, 담장, 전주 및 도로시설물 등 구조물 위치를 표시하고 조사할 때 토지소유자, 이해관계인 등 입회 협조

● 경계점표지 설치에 따른 주민 입회

- 경계를 설정하고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거나 경계확정으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 및 토지소유자 등 반드시 입회하여 경계에 대한 의견 요청

●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출 및 합의 등

-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서 제출
 - 경계설정에 대한 토지소유자간 합의 요청
 - 경계설정 및 경계확정에 대한 의견제출
 - 경계설정에 따른 면적증감으로 발생될 갈등 최소화
- ☞ 지적재조사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제출

[붙임]

동의서 등 제출서식

※ 동의서 등 서식 참고하시어 부분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0. 6. 18.>

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

동의서

동의철회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"√"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
소유자	성 명 (기관·단체명)	생년월일 (등록번호)
	주 소	전화번호

소유 토지 현황

읍·면	동·리	지번	지목	면적(m ²)	비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2항·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에 (동의 동의철회)합니다.

년 월 일 토지소유자 (서명 또는 인)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2서식] <신설 2017. 10. 19.>

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

[] 동의서
[] 동의철회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			
소유자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성 명 (기관·단체명)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생년월일 (등록번호)</td> </tr> <tr> <td>주 소</td> <td>전화번호</td> </tr> </table>	성 명 (기관·단체명)	생년월일 (등록번호)	주 소	전화번호
성 명 (기관·단체명)	생년월일 (등록번호)				
주 소	전화번호				

소유 토지 현황

읍·면	동·리	지번	지목	면적(m ²)	비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에 [] 동의 [] 동의철회합니다.

년 월 일

토지소유자

(서명 또는 인)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7. 10. 19.>

대표자 지정 동의서

※ 공유 토지 현황

접수번호			접수일		
읍·면	동·리	지번	지목	면적(m ²)	비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는 ○○○을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로 선임하고, 수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의 행위를 대표 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대표 소유자 (선임 수락자)	성 명(기관·단체명)	(서명 또는 인)
	생년월일(등록번호)	
	주 소	
	전화번호	
위임자 (동의자)	성 명(기관·단체명)	(서명 또는 인)
	생년월일(등록번호)	
	주 소	
	전화번호	
	성 명(기관·단체명)	(서명 또는 인)
	생년월일(등록번호)	
	주 소	
	전화번호	
	성 명(기관·단체명)	(서명 또는 인)
	생년월일(등록번호)	
	주 소	
	전화번호	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